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노동개혁

수신 관내 훈련기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 전파

1. 관련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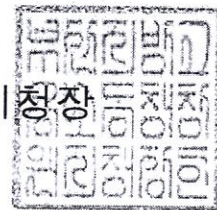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용자 또는 수강의 제한)

다.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3조의2(훈련기관의 의무)

2. 최근 우리지청 관내에서 발생한 부정훈련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부정훈련 및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간호학원의 현장 실습기간 중 출결부정사실이 종종 확인되는바, 철저한 출결확인 및 관리를 통해 동일·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 1부. 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



주무관

서정기

직업능력개발

팀장

임상희

소장

전결 2016. 11. 8.

김진원

협조자

시행 창원고용센터-24339

(2016. 11. 8.)

접수

우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상남동, 고용지원센터빌딩)

/ <http://moel.go.kr/changwon/>

전화번호 055-239-0983

팩스번호 0505-130-1021 / sjk3736@korea.kr

/ 비공개(5)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이 일어갑니다.

붙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사례

○ 사례1

훈련기간(2015.9.23. ~ 2015.11.5.) 중 10월 14일, 15일 총 이틀간 훈련생 A가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갔으나, 훈련생 B에게 카드를 맡겨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하여 부정 출석(자진신고)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6항에 의거 카드를 맡긴 훈련생 A와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 B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 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훈련비 신청 전에 훈련기관에서 자진 신고하여 부정수급액은 발생하지 않음.

○ 사례2

훈련기간(2015.12.1. ~ 2015.12.31.) 중 12월 21일 ~ 23일 총 3일간 결석을 했음에도 일반수강생인 친구에게 카드를 맡겨 대리 출석(자진신고)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6항에 의거 카드를 맡긴 훈련생 A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 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훈련비 신청 전에 훈련기관에서 자진 신고하여 부정수급액은 발생하지 않음.

○ 사례3

훈련기간(2015.8.3. ~ 2015.9.11.) 중 8월 8일 ~ 13일 총 6일간 훈련생 C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동 과정 훈련생이 아닌 지인에게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하여 부정 출석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6항에 의거 카드를 맡긴 훈련생C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 중지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지원·용자·수강제한 처분(120일)

○ 사례4

훈련기간(2015.8.10. ~ 2015.9.8.) 중 훈련생 D는 혈전성 내치핵으로 9월 3일 ~ 7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동 과정 훈련생이 아닌 지인에게 대리출석체크를 부탁하여 부정 출석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6항에 의거 카드를 맡긴 훈련생 D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 중지 처분을 하였으며, 부정출석한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출석률 80%이상이 되어 훈련비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바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음.

○ 사례5

훈련기간(2015.3.10. ~ 2016.2.29.) 중 현장실습기간인 7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일간 훈련생 E가 해외여행을 갔으나, 7월 2, 3일 출석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여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부정수급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1호, 제56조제2항 및 제3항2호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2제1항2호 및 [별표6의2] 나.개별기준에 의거 지원된 훈련비 반환 및 해당금액 추가징수와 지원·용자·수강제한 처분(90일)

○ 사례6

훈련기간(2015.9.15. ~ 2016.8.31.) 중 현장실습기간인 2월 17일 ~ 20일 총 4일간 훈련생 F는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여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자진신고)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제1항3호에 의거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 감액하여 징수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제1의 나.개별기준에 의거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용자 및 수강제한 처분(90일)

○ 사례7

훈련기간(2016.3.25. ~ 2017.3.8.) 중 현장실습기간인 7월 22일 ~ 25일 총 4일간 훈련생 G가 해외여행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거짓 보고 하여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으나 이후 자진신고

- 행정처분 내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제1항3호에 의거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 감액하여 징수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제1의 나.개별기준에 의거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융자 및 수강제한 처분 (90일)

○ 사례8

훈련기간(2016.4.18. ~ 2017.3.10.) 중 현장실습기간인 7월 21일 ~ 25일 총 5일간 훈련생 H가 해당 실습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였고 이후 자진 신고함

- 행정처분 내용: 훈련생 H의 입원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은 출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1조의2제3항에 의거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정출석일수를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으로 부정수급 및 수강제한처분치 아니함.